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3일 08시 21분



목차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목차 | 2 |
| 부동산중개업안내 | 3 |
| 주택(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) | 3 |
| 비고 | 3 |
| 오피스텔(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) | 3 |
| 주택 이외(토지, 상가 등) | 4 |

| |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개별공시지가열람 | 개별주택가격열람 | 도로명주소안내 | 부동산중개업안내 |
| 조상땅 찾기 안내 | 비법인단체 신청 |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단속 | 부동산중개수수료 |
|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 | 부동산중개사무소 자율점검 | 부동산특별조치법 안내 | 지적재조사사업 |

- [개재안및중개업소현황](#)
- [유의사항](#)
- [중개수수료](#)

주택(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)

2021. 10. 19. 시행

| 구분 | 거래금액 | 요율 | 한도액 | 비고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|--|
| 매매교환 | 5천만원 미만 | 1천분의 6 | 25만원 | <거래금액 산정> ▪ 매매 : 거래금액 ▪ 교환 : 교환대상 중 거래 금액이 큰 중개 대상물의 가액 ▪ 임대차 등 > 월세가 없는 경우 : 보증금 > 월세가 있는 경우 ▪ 5천만원 이상 : (월세×100)+보증금 ▪ 5천만원 미만 : (월세× 70)+보증금 |
| | 5천만원 이상 ~2억원 미만 | 1천분의 5 | 80만원 | |
| | 2억원 이상 ~9억원 미만 | 1천분의 4 | - | |
| | 9억원 이상 ~12억원 미만 | 1천분의 5 | - | |
| | 12억원 이상 ~15억원 미만 | 1천분의 6 | - | |
| | 15억원 이상 | 1천분의 7 | - | |
| 임대차 등 | 5천만원 미만 | 1천분의 5 | 20만원 | |
| | 5천만원 이상 ~1억원 미만 | 1천분의 4 | 30만원 | |
| | 1억원 이상 ~6억원 미만 | 1천분의 3 | - | |
| | 6억원 이상 ~12억원 미만 | 1천분의 4 | - | |
| | 12억원 이상 ~15억원 미만 | 1천분의 5 | - | |
| | 15억원 이상 | 1천분의 6 | - | |

비고

-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.
-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,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오피스텔(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)

| 구분 | 상한요율 | 요건 |
|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매매·교환 | 1천분의 5 | ▪ 전용면적 85㎡이하일 것 |

(http://www.yeosu.go.kr)

주택 이외(토지, 상가 등)

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Yeosu Web Contents

